

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17
----------	-----

2014년 12월 18일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11월 20일, 성백진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25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(2014년 12월 1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성백진)

-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가.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.

〈조항별 신·구 대비표〉

조항 구분	현행	개정안
제2조 제9호 중	부의하는	회의에 부치는
제4조 제3항 중	해촉할	위촉해제할
	잔임기간으로	임기가 남은 기간으로
제6조 제1항 중	년2회	연 2회
제6조 제2항 중	소집하고자 하는	소집하려는
	부의사항을	회의에 부치는 사항을
제10조 중	년2회	연 2회
제11조 중	비치하여야	보관하여야

나.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, 이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, 그 긍정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9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로 한다.

제4조 제3항 중 “해촉할”을 “위촉해제할”로 하며 “잔임기간으로”를 “임기가 남은 기간으로”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중 “년2회”를 “연 2회”로 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소집하고자 하는”을 “소집하려는”으로 하고 “부의사항을”를 “회의에 부치는 사항을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년2회”를 “연 2회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비치하여야”를 “보관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~8. (생략)</p> <p>9. 청소년 건전육성·보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"시장"이라한다)이 <u>부의하는 사항</u></p> <p>제4조(위원의 임기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,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<u>해촉할 수 있으며</u> 위원 <u>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</u> <u>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</u> <u>으로 한다</u></p> <p>제6조(회의)</p> <p>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<u>년2회</u>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를 <u>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</u>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<u>부의사항을</u>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2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~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----- -- <u>회의에 부치는</u> --</p> <p>제4조(위원의 임기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위촉해제할</u> ----- ----- <u>임기가 남은 기간</u> <u>으로</u> ----.</p> <p>제6조(회의)</p> <p>① ----- ----- <u>연 2회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소집하려</u> <u>는</u> ----- <u>회의에 부치는 사항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제10조(청소년 회의 개최) 위원장은
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
세미만의 중·고등·대학생인 청소
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년2회 이상
개최한다.

제11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사항
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, 비치하여
야 한다.

제10조(청소년 회의 개최) -----

----- 연 2회 -----
-----.

제11조(회의록) -----
----- 보관하여
야 ---.